

## 사업장 재해예방 시스템 전면 재점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예방 및 사고대응 시스템이 재점검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12일 김항식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계부처는 화학물질 등 위험물 관리 체계와 사업장 재해예방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환경유해물질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지침 마련과 전문인력 활용 등 맞춤형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동시에 유사 시 초기대응과 주민보호 대책 등 비상 대비태세가 효과적으로 작동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미사고는 사전관리 대책의 미흡함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부실한 운영이 문제시되었다. 김 총리의 이번 발언을 통해 위험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번 김 총리의 발언에 맞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미사고는 사전관리 대책의 미흡함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부실한 운영이 문제시되었다. 김 총리의 이번 발언을 통해 위험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번 김 총리의 발언에 맞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 보고 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월 12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자료, 공정 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담은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두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구미 공장의 경우 설립 당시 근로자가 4명이어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었고, 이에 고용부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루 1톤 이상의 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면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대형사고 발생 시 인근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미사고 발생 시 인근업체의 일부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도 독성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가 밝힌 계획은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장비(방계장비 및 약품)와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위험물질 정보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대책도 마련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화재위험 높은 공사장에 임시 소방시설 설치 추진

앞으로 인화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공사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3일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고가 계기가 됐다. 각계에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인명피해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이번엔 법 개정까지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의 사업주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조치 등 안전관리 책임이 부과된다. 특히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의 임시 소방시설 또는 법정 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만약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보완 완료시까지 해당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해당 공사의 위험 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안전교육 미이수자를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의 사고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작업자들의 안전의식도 강화되면서 소방안전관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앞으로 더욱 강화돼 시행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0월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일용근로자들에게는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된다. 고용부는 취업대장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교육을 받은 일용근로자에게는 교육수당으로 일 2만 원을 제공키로 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일용근로자들에게는 다양한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 먼저 워크넷 DB 등을 활용해 구인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면서 취업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도 적극 알선키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기초 교육기관별로 전담 고용센터를 지정하고 담당자를 교육장에 직접 투입할 예정이다. 담당자는 구직자에게 취업하이패스 티켓(고용센터 방문 시 즉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나눠주는 한편,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구직등록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고용센터에는 건설 특화 상담창구가 개설된다. 이곳을 찾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집중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연결시켜 준다. 그리고 건설 근로자들이 각종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내일배움카드제'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에 일용근로자들은 희망하는 시간에 수시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관련 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도입 예정

정부가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화평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1년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법 시행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부족해 화학물질 사전예방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화평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전방위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의 핵심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등록하도록 하는데 있다.

먼저 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 또는 기존 등록 대상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용도,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화평법에는 유해성 평가를 거쳐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제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등록신청자료를 검토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독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조·수입량이 연간 100톤 이상이거나 유해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해성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화학물질의 개발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안전보건공단 '아파트·주차 관리원 안전지침' 마련

지난 7월 전남 소재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에서 아파트 관리원인 박모씨(72세)가 집하장 위쪽 화단에서 쓰레기를 던지던 중 중심을 잃어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상가 기계식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 김모씨(68세)가 방문객의 차량출고 요청에 따라 단말기를 이용해 차량을 출고하려 했으나 주차기가 작동하지 않아 주차기 내부로 들어가 확인하던 중 3m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처럼 아파트 또는 대형건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 작업, 도·소매업종 설비 관련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가 보급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서비스업종 중 건물관리업 및 위생·유사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사망재해 다발 3개 업종의 실제 재해사례와 발생원인, 예방대책을 담은 사고사망 사례집을 10월 14일 발간했다. 이를 기술지도 사업장, 관련 직능단체와 지자체 등에 보급키로 했으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801명)를 분석한 결과, 건물관리업 및 위생·유사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3개 업종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51.8%)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종의 사고사망 재해는 각종 차량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발생형태별로는 교통사고, 추락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각각의 책자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사항, 재해사례별 원인 및 대책 등이 제시됐다. 또한 폐기물 수집차량, 계단, 사다리, 지게차 등의 재해발생 기인물별 특성과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설명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며 "이번 사례집이 사업주와 관련 직능단체의 재해예방 활동에 도움이 됨으로써 재해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